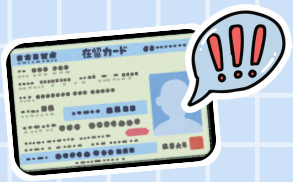
2026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의 재류수속 등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됩니다!



출처 :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

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개정됩니다.

또한,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대한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,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.

자격변경 허가・기간갱신 허가의 수수료 개정에 관하여

개정 전의 수수료	창구 신청	온라인 신청
	6,000 엔	5,500 엔

개정 후의 수수료（허가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）

허가기간	창구 신청	온라인 신청
3개월 이하	10,000 엔	10,000 엔
3개월 초과 6개월 이하	18,000 엔	15,000 엔
6개월 초과 1년 미만	25,000 엔	21,000 엔
1년	33,000 엔	27,000 엔

허가기간	창구 신청	온라인 신청
1년 초과 3년 미만	48,000 엔	42,000 엔
3년 이상 5년 미만	64,000 엔	56,000 엔
5년 이상	75,000 엔	65,000 엔

온라인 신청의 경우,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, 수입인지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위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.

영주 허가의 수수료 개정에 관하여

개정 전의 수수료	10,000 엔	개정 후의 수수료	200,000 엔

영주 허가 신청은 창구 신청만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
수수료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

재류자격 변경 허가, 재류기간 갱신 허가 또는 영주 허가를 받는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, 그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 :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「정주자（난민 인정）」의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」

수수료 개정 및 감액・면제 조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moj.go.jp/isa/01_00644.html